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 2. 25(수),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 석 자 : 김학범, 김 원, 류제현,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황재하, 양경모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신축 현상 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1)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2)	공개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3)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신축	공개
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	공개
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1)	공개
10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2)	공개
11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2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	공개
13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포획	공개
14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포획	공개
15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지정 해제	공개
16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7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설치 등 도로 개설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18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19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내 화장실 신축	공개
20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	공개
21	「문경새재」 내 아리랑 기념비 설치	공개
22	「문경새재」 내 옛길 보존 기념비 설치	공개

【검토사항】

23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 내 황새」 입식 사전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2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	----

【심의사항】

천기 2015-02-01

1.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제주 흑돼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흑돼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4. 10. 8.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
 - '14. 10. 16. 1차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사)한국중축개량협회 *** 팀장>
 - '14. 11. 15. 2차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박사)
 - '14. 12. 15.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최종자료 제출(육지돼지와외의 외형적 특징)
 - '15.1.26~2.24 지정예고(의견수렴 결과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명 칭 : 제주 흑돼지(Jeju black pig)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축산진흥원 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초본(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역사(1823년) 등 옛 문헌에 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향토적 가치가 있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이 있음.
 -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하여 순수 계통번식사업을 시작하여 제주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243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의 보존하여 국가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함.
-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라. 문화재 현황

□ 역사적 의의

- 제주도 광지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돼지 유존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 돼지 DNA와 99% 이상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음
- 재래돼지의 기록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서 고대 삼국의 하나인 부여에서 관직 명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동물명을 사용한 사실과 조선왕조실록 세조 33권 8년 6월에 세조 10년에 호조에서 경외의 대소인가에서 모든 닭, 돼지를 기르게 하고, 그 등급을 나누어 상벌을 줄 것을 청하여 따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익의 성호사설 제6권 만물문 금수색에는 돼지의 모색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돼지가 다 검은빛을 띠며, 간혹 흰점이 박힌 돼지가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고 하였음. 구한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재래돼지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사육지역의 지명을 따 경기도 강화도지방의 강화돈, 경상북도 김천 지례지방의 지례돈, 경상남도 사천지방의 사천돈, 전라북도 정읍지방의 정읍돈, 제주 지역의 제주돈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각각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다고 전해짐
- 제주흑돼지에 대한 옛문헌으로 탐라지, 제주읍지, 대정정의읍지, 제주군 기록에 제주흑돼지 사육 기록이 있음

□ 서식지역 또는 사육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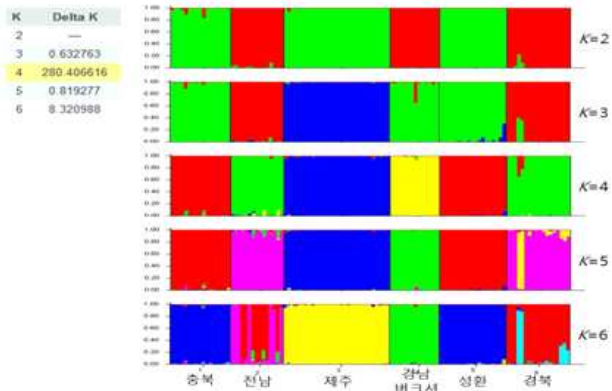
- 전국 각지에서 재래돼지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사육지역의 지명을 따 불리었지만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돈 등과의 누진교잡 등으로 순수 재래돼지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제주도의 제주돈은 1960~70년까지도 “뚝통시”라 하여 돌담을 둘러 터를 잡고 변소에 돼지를 함께 두어 사육하여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재래종에 대한 조사와 수집 활동 측면에서 성돈 5두를 구입하여 순수 계통 번식을 개시하였고, 이후 축산시험장(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들 후손들 중 일부를 분양받아 내륙지역 재래돼지 순수화 복원 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됨.

□ 유전형질 및 외형 등

< 유전형질 >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 집단 유전적 균일도 초위성체를 이용한 재래돼지 집단 간에 집단 구조분석 결과 유전적 균일도 90%이상을 보

였으며, 4개의 클러스터 중 충북집단과 성환집단이 클러스터 1, 전남과 경북 집단이 클러스터 2에 속하였으며, 제주집단은 클러스터 3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타 재래돼지 집단과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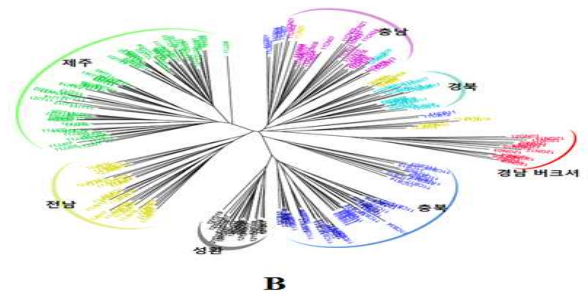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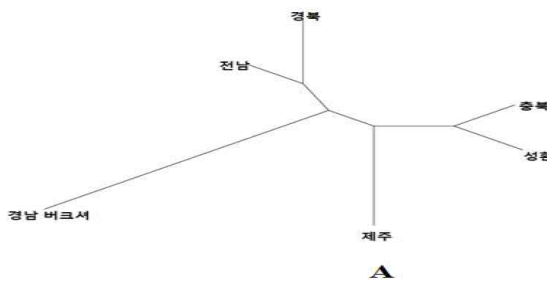


Given pop.	Inferred Clusters				Pop. Size
	1	2	3	4	
충북	0.985	0.010	0.002	0.003	17
전남	0.007	0.967	0.008	0.018	15
제주	0.007	0.002	0.989	0.002	30
경남버크셔	0.002	0.006	0.001	0.991	14
성환	0.989	0.001	0.009	0.001	19
경북	0.034	0.960	0.002	0.004	18

<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의 집단별(A), 개체별(B) 계통도 >

- 초위성체 마커를 기초한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 결과, 각 집단별로 독립적인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성환집단과 충북집단, 경북집단과 전남집단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유연관계를 보였으며, 제주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먼 집단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

- 성환집단(국립축산과학원 보존 재래돼지집단), 경남집단(지방 종축기관 보존 외래종집단)
- 충북, 전남, 경북집단 (각 지방 종축기관 보존 재래돼지집단)
- 제주집단(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내 보존집단)

< 표준품종의 확립 >

- 조선농업연감(1920),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성적요람(1927), 국립농사시험장 보고서(1946)을 근거로 모색, 비단색 및 지제가 흑색이고, 머리는 길고 뽕족하며, 이마에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는 길고 곧으며 세로 주름이 있

고 턱이 곧으며, 귀는 직립전향(상향)인 개체를 재래돼지로 정의함을 바탕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재래돼지”로 품종 등록

- 1986년부터 순수 계통 번식한 제주흑돼지를 2008년부터 등록하여 왔으며, 외모 선발 도태를 거쳐 현재 75마리가 등록됨

< 외형형질 >

- 전신 모색은 흑색, 모발은 굵고 길며 밀생되어 있으며, 귀가 작으며 접혀 있지 않고 위로 솟아 있음(직립상향)

구분	축산진흥원	국립축산과학원	비고
귀	귀가 작으며 위로 솟아 있음(직립상향)	귀가 크고 넓으며 앞으로 뻗어 있음(직립전향)	-
모발	흑색, 모발굵기 굵음 (굵기 평균 0.3mm내외)	흑색, 모발굵기 얇음 (굵기 평균 0.13mm)	돼지 모발 굵기는 0.2mm을 넘지 않음 (개량돼지 포함)

□ 군집규모

- 현재 제주 도내 80,319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및 매년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성읍민속마을 등에 정기적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271마리 보유중

□ 사육시설

- 현재 돈사 2개동 632㎡면적에 사육중임.

구분		축사면적 (실제면적)	두 당 소요면적	적정두수	비고
재래 돼지	소 계	632	-	600	
	웅 돈	68	6.0	11	
	분 만	186	3.9	48	
	대 기	198	1.4	141	
	육성·자돈	180	0.45	400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서 제시한 사육환경을 확보하여 사육하고 있음

□ 사양관리

- 제주흑돼지 사양관리는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에 의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화된 백신접종 스케줄에 맞춰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매년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의뢰 및 병성감정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축사 내·외부 1일 1회 이상 소독으로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부터의 차단방역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 제주흑돼지 이용 실태

- 제주 흑돼지의 생활공간인 돛통은 인분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퇴비의 생산 등 생태순환의 장치역할을 하며, 제주의 혼례, 상례, 포제(무속신앙) 등에 빠질 수 없는 음식재료이며, 추렴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 수행
- 제주흑돼지로 만든 음식으로는 돛수애, 돛베고기, 고기 국수, 몸국, 돛새끼회 등이 있으며, 제주 전통음식 선호도에서 흑돼지고기가 1위를 차지('11.11.3, 제주일보)
- 제주 성읍 민속마을, 휴애리 등에서 흑돼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마. 검토의견 (*****)

- 제주흑돼지는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 제주도 산간오지에서 재래돼지 특징이 있는 5두(암4, 수1)를 수집하여 순수계통 번식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흑돼지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수혈통 재래돼지를 품종등록을 실시하여 제주흑돼지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있음
- 육지와 격리되어 제주섬만의 향토성과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함.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제주흑돼지 집단 간 구조분석 결과 유전적 균일도가 9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타 재래돼지 집단과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함
- 제주흑돼지의 귀는 직립상향이 육지재래돼지와 구별되는 외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바. 참고자료

□ 최종의견 : *** 문화재위원

- 제주흑돼지는 제주축산진흥원이 1986년 제주 오지와 외딴섬에서 재래종 돼지를 수집하여 지금까지 순수계통번식을 수행함으로 재래돼지 혈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품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래돼지는 질병에 강하고 거친 사료도 잘 먹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만숙종으로 성장이 더디고 번식력이 나쁜 탓으로 적은 사료를 먹고도 잘 자라고 새끼를 많이 낳는 서양 수입종 돼지와 많은 교잡이 이루어져 재래돼지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제주도의 뜻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순종 재래돼지가 존속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1988년 국립축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재래가축의 보존을 위해 재래돼지의 전국적인 수집에 나섰을 때 제주흑돼지를 육지로 반출함으로 인하여 지금은 육지재래돼지와 제주흑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육지보다 철저히 재래돼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됨으로 제주흑돼지가 가지고 있는 ‘귀의 직립상향’이 유지된 것은 그나마 행운이다. 따라서 제주흑돼지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5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제3조 1항 별표 1에 의한 토종가축별 품종인정기준 2. 토종돼지(직립상향, 직립전향) 그리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가축외모심사기준-재래종 돼지(Korean native pig)’의 심사선발기준(직립전향)을 충족한다하여도 제주흑돼지가 천연기념물 동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흑돼지의 귀는 직립상향이 육지재래돼지와 구별되는 외모의 특징’이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체형과 관리기준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흑돼지’라는 명칭은 이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흑돼지와 천연기념물흑돼지와 혼동과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과 구별되는 명칭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제주재래돼지’, ‘천연기념물 제주돼지’ 또는 ‘천연기념물 제주꺼명도새기’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지조사 의견 / 1차 '14. 10.8 / 2차 '14.11.15

<*** 문화재위원>

- 제주 흑돼지는 개국설화에 등장하고 진상품이 될 정도의 역사성과 함께 돛통 시에서 사육하였다는 특이한 문화성도 있다. 그리고 제주는 육지와 격리된 섬이라는 점에서 재래돼지의 특성이 육지보다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고 있는 재래돼지의 특징은 전신이 흑색이며, 코주둥이나 발굽의 색이 흑색이어야 하며, 백자모(새치)나 백반모가 없어야 되고, 귀가 직립하고 전향되어야 하고, 이마에는 산모양 주름이 있고, 콧등에 세로주름이 있어야 하고, 6쌍 이상의 유두를 갖고 있되 부유두는 없어야 한다.
- 10월 16일 1차 현지 방문 조사 시 관찰한 제주 흑돼지는 전신 피모는 흑색이나 백색모가 밀생한 백반모 유사구조가 70마리 중 3마리 관찰되었고, 아울러 많은 개체(12마리)에서 백자모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발굽이 백색인 개체(3마리)도 관찰되었다. 더구나 이마의 산모양 주름이 불분명한 개체(3마리)도 있었다. 그리고 제주 흑돼지가 육지 흑돼지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지적한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보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11월 15일 재방문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제주축산진흥원은 1달여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새치돈, 주름 미약돈, 노령돈, 번식장애돈, 근교계수 불량돈 등 27마리를 도태하기 위해 인접 돈사에 격리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절차상 그대로 혼거되어 있었고, 모돈에서 부유두가 관찰되는 개체가 있는 등 아직 불량돈 제거가 미진한 상태였다.
- 뿐만 아니라 제주 흑돼지와 육지 흑돼지와 구분되는 특징에 관해서는 제주 돼지는 귀가 작고 위로 솟은 직립상향(육지 재래돼지 크고 직립전향)이고, 모발이 0.3mm 내외로 굵다고(육지 재래돼지 0.13mm)하나 이에 관한 문헌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현재 제주 흑돼지 표준기준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 제주 흑돼지만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자체의 모순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육지 흑돼지와 구별되는 특징을 재정립하여 보완한 후 제주 흑돼지를 위한 표준체형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전문가의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 제주 흑돼지의 사육 기원

- 한국의 재래돼지는 만주지역에서 서식하던 대형, 중형, 소형종 중 이동이 쉬운 소형종이 약 2,000여년전 고구려 시대부터 한반도에 유래정착된 것임
- 구한말까지 고유의 재래돼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육지역의 명칭에 따라 지레돈, 사천돈, 제주돈 등으로 불리짐
- 1908년을 전후하여 버크셔종과 요크셔종의 국내 도입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크셔종과의 누진교배를 실시
- 순수한 재래돼지의 혈통은 거의 소멸위기였으나 1986년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산간벽지에 재래돼지의 형태를 갖춘 돼지 5두를 구입하여 재래돼지 혈통을 유지·보존 함
- 1988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재래돼지 복원을 위해 제주도 축산진흥원, 충북도종축장에서 9두의 재래돼지를 구입·증식하면서 복원연구 실시
- 2008년 재래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품종 등록 실시하여 2014.10월 현재 81두 축산진흥원 재래종으로 품종등록 완료
- 1987년부터 2014년 6월 현재 제주흑돼지(재래돼지) 6,236두를 제주도내 농가에 분양

□ 제주흑돼지의 유전적 특성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 집단 구조분석결과 재래돼지 모든 집단에서 90%이상의 균일도를 보였고, 제주집단은 클러스트 3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타 집단과의 유전적 특이성 존재(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년)
- 제주흑돼지 특이적 유전자 36개 발굴(제주대학교,2013)
- 제주흑돼지를 이용한 연구 논문 및 보고서 10편
- 제주 흑돼지는 내륙의 재래돼지와의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짐

□ 제주흑돼지의 외형 특성

- 재래돼지 특징이나 특성에 관한 문헌은 조선농업편람(1920), 권업모범장 성적요람(1927), 국립농사시험장 보고서(1946)에 기술
 - 조선농업편람에서는 피모가 흑색으로 체격은 외소하고 체중은 22.5~32.5kg이며,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배는 심히 하수되어 있고, 만숙에다 비만성이 없으나 체질은 강건하고, 번식력도 양호하며, 특히 육미는 조선사람의 입맛에 적합한 것 같다고 기술
- 체형특성
 - 몸전체의 모색은 흑색이며, 모발은 굵고 길다
 - 몸통은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음

- 이마에 산모양 안면주름, 코 주위에 세로주름과 코끝이 흑색
-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
- 코길이는 길고 곧으며, 귀는 하수되지 않고 직립
- 제주흑돼지는 개량돼지에 비해 생산성(산자수 및 도달일령 등)이 낮아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음(제주재래가축 편람, 1998)
 - 산자수 : (제주흑돼지) 7.3 (개량종) 9~13두
 - 100kg 도달일령 : (제주흑돼지) 360일 (개량종) 140일~150일
- 1986년 상기 문헌상에 있는 재래돼지의 특징이 있는 제주 산간 벽지의 돼지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유지한 결과 위와 같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제주 흑돼지는 생산성이 낮아 제주 고유의 품종으로 보존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 제주흑돼지 등록 및 관리체계

- 2008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재래종으로 품종등록 실시
 - 지속적 혈통관리 및 재래종 특징에 맞는 돼지 선발·도태 실시
- 2012년 제주흑돼지 FAO(국제식량기구)에 “제주 재래돼지” 단일품종으로 등재
- 제주흑돼지의 성장속도 및 특징에 맞는 사양단계별 사양관리 실시
- 약성가축전염병(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사전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차단방역체계를 구축
- 제주흑돼지를 사육돈사 2동(632m²)으로 구성되어 사양단계별 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사육

□ 제주흑돼지 이용 실태

- 제주 흑돼지 이용 전통문화
 - 제주의 흑돼지 생활공간인 돛통은 인분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퇴비의 생산 등 생태순환의 장치역할을 함
 - 돼지고기는 제주의 혼례, 상례, 포제(무속신앙) 등 빠질수 없는 음식재료이며, 추렴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
- 제주흑돼지로 만든 토속음식
 - 제주흑돼지로 만든 음식 : 돛수애, 돛베고기, 고기 국수, 몸국, 돛새끼회 등
 - 제주 전통음식 선호도 1위는 흑돼지고기('11.11.3, 제주일보)
- 제주 성읍 민속마을, 휴애리 등에서 흑돼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종합의견

- 제주 흑돼지는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 제주도 산간벽지에서 재래돼지 특징이 있는 돼지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보존, 재래종으로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종 품종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내륙과 격리된 제주도만의 토착화된 돼지에 대하여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 있음
- 내륙의 재래돼지와 차이점을 보면 유전특성분석에서 내륙의 돼지와 유전적 특이성이 보임
- 1986년 이후 원 종돈 5두로 계속 번식을 지속하고 외부로부터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고 제주도 축산진흥원만의 재래돼지를 생산, 사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따라서 문화재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1항 관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 제주 흑돼지의 재래종 품종 등록을 위해 몸전체의 흑색이 아닌 이모색이 있는 경우는 즉시 도태하고 재래종의 등록요건에 맞는 돼지를 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함
- 제주 흑돼지에 대한 내륙의 재래돼지와 차별성에 대한 유전적연구와 제주축산진흥원 내의 흑돼지에 대한 지속적인 체형 및 생산성에 관한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제주 흑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위한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과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이 요구 됨
- 제주 흑돼지는 현재 제주도에서 교잡되어 이용되어, 제주 흑돼지에 대한 이름에 혼선이 예상되는바, 제주재래돼지로 지정받는 것이 좋을 듯함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 육지지역의 경우 개량종이 1900년초에 도입되어 재래종과 교잡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제주도는 섬으로 고립되어 있어 이동수단이 없어 문헌상으로 1970년초에 이시돌목장에서 처음으로 외국산 흑돼지 버크셔 몇 마리가 도입되어 제주지역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도에 우도 등 도서 벽지에서 형태학적으로 재래돼지에 가까운 개체를 선발하여 오늘날 재래돼지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제주도에 개량종이 도입된 시점부터 수집까지 약 15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그나마 육지지역에 비해 교잡정도가 약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재래돼지 품종 형성에 대한 유전학적 증거와 현재 집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주재래돼지 일부 집단의 경우 선조는 중국 산야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멧

돼지가 집돼지로 가축화 된 이후 한반도를 경유하여 제주도에 넘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현재 모계유전 특성 분석을 위해 제주재래돼지 집단과 수입종과 육지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재래돼지를 계통유전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제주재래돼지만 별도의 cluster로 구분됨에 따라 mtDNA(미토콘드리아 DNA)상에서 육지지역 재래돼지와 차별화 된다고 볼수 있음.

- 그러나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개체는 mtDNA(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형과 유럽형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유럽형으로 보이는 개체들은 도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빈도면에서 제주도축산진흥원 돼지의 경우 아시아형이 70%이상 확인되는 반면, 육지지역 재래돼지들 경우에는 70%이상이 유럽형으로 관찰됨. 이점만 보더라도 재래돼지 보존가치는 높다고 할수 있고, mtDNA(미토콘드리아 DNA)상에서 아시아형으로 고정할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쉽게 고정이 가능함.
- 재래돼지의 경우 종축등록규정에 얼굴형태가 긴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래돼지를 살펴보면 긴형태와 짧은형태가 동시에 확인되고, 최초 재래돼지의 선조는 중국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중국재래돼지의 경우 얼굴이 짧은 품종들이 다수 있어 얼굴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재래돼지에서 부유두 발생은 일반돼지에서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그 이유는 돼지가 산자수(한배 새끼수)가 많아 보다 많은 자손을 양육해야 하므로 산자수가 많은 개체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유두가 도태 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그 이유는 유두수가 좌우 6쌍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들 개체간 교배를 할 경우 자손의 유두가 모두 6쌍만 나오는 경우는 드뭄. 다만, 종축등록 규정상에서 6쌍 또는 7쌍 등 좌우 대칭이 된 유두를 가진 개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종합의견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한 재래돼지는 1986년도에 수집되어 약 28년간 외부에서 재래돼지를 도입하지 않고 순계번식을 통해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품종으로서 보존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음. 일부 개체에서 발생한 새치는 육성기 또는 비육기에는 거의 발생이 하지 않고 2년 이상된 성체에서 일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런 노화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고, 다만 표면에 흰털이 1cm이상 많이 확인되는 개체들은 도태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가결

2.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사항임.
- 2014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 ▶ 보류 사유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

<소위원회 검토회의>

- 1차 검토회의 : '14.12.10 / 2차 검토회의 : '15.1.19
 - * 검토위원 :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사적분과 (***) 문화재 전문위원)
- 2015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 ▶ 보류 사유
 - 생태습지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을 1구역으로의 변경 추진방안 <변경도면(안), 면적, 추진 일정 등 제시>
 - 서낙동강 수변공원의 관리도로 조명설치 제외에 대한 검토
 - 서낙동강 수변지역의 인제책 설치 계획 보완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교량 등) 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1,885,910m²
 - 현상변경 허가신청내용

<문화재구역>

- 하천시설 10,786㎡(제방 5,320㎡, 호안 4,185㎡, 제방연결로 1,281㎡)
- 교량 32,341㎡(12개소)
- 공원 및 녹지 : 39,706㎡(공원 및 녹지시설 설치)

<허용기준 1구역>

- 도로 31,518㎡ (B26~40m)
- 오수중계펌프장 1,011㎡
- 하천시설 136,786㎡
: (제방B5.0m, 63,201㎡, 호안 64,048㎡, 제방연결로 9,537㎡), 교량 11,418㎡(12개소)
- 공원 및 녹지 1,008,694㎡ (완충저류시설 1,775㎡, 신설양수장 1,000㎡ 등)

※ <허용기준 2~5구역>

- 건축물은 허용기준 내 높이 및 제반사항 준수(지구단위계획상 해당 구역내 높이기준 제한)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2014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결과 보류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두 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음.
- 2015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사유” 조건에 대하여 보완 요청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출함.
 - ▶ 심의결과 “보류 사유” 반영 여부
 - 생태습지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을 1구역으로의 변경 추진방안 <변경도면(안),면적, 추진 일정 등 제시> → 반영
 - 서낙동강 수변공원의 관리도로 조명설치 제외에 대한 검토 → 반영
 - 서낙동강 수변지역의 인제책 설치 계획 보완 → 반영(전구간 설치)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교량 등) 보고 → 반영

마. 참고자료(1차 검토회의 의견 / 2014.12.10)

< 수변 계획 >

- (***, ***, ***)
 - 습지생태원 및 서낙동강 수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동선 조정을 검토할 것
- (***, ***)
 - 서낙동강 수변 관리동선 조명계획 시 조명관리프로그램(타이머 등) 설치 보다는 동작센서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 계획/설계 이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

< 교량 계획 >

- (***, ***)
 - 보행교 중심으로 탐조공간 등 휴식공간 성격의 쉼터 배치, 녹색공간 도입 등 검토 필요
- (***, ***)
 - 조류보호를 위해 교통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차량 속도 저감 방안 도입 필요
- (***, ***)
 - 조류 보호를 감안 세물머리변 보도교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요망

바. 참고자료(2차 검토회의 의견 / 2015.1.19)

< 수변 계획 >

- (***, ***, ***, ***)
 - 서낙동강 수변은 녹지네트워크 결절점에 계획된 버퍼존(이용 확산 방지) 주변에 대하여
 - 이용관리를 위한 인제책(柵) 도입을 검토하고
 - 일반관리로 지역은 조명을 최소화하고, 버퍼존 중심으로 조명 필요성 검토
 - 습지생태원, 평강천~맥도강변 보완계획 : 의견 없음

< 교량 계획 >

- (***, ***, ***)
 - 세물머리변 보행교량 2개소에 대해 현 계획과 위치조정대안을 상호비교 검토할 것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3.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2015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근린생활신축(소매점)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후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로 “보류”된 건임.
- * 2014년 제7차(‘14.7.28)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높이(5.55→7.35m)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변경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 사업목적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변경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 당초 허가사항
 - 대지면적 1618.00㎡, 연면적 610.00㎡, 지상 1층 2동, 조경면적 90.00㎡
 - 일반철골조 : 건물전면폭 1동 30m, 2동 25m / 건물옆면폭 1동 12m, 2동 10m
 - 최고높이 5.55m, 지붕 THK175 준불연판넬, 사면 THK125 메탈판넬
 - ❖ 변경 신청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 5.55m→7.35m
 - ※ 사업내용 변경없음. 건물 높이만 변경신청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 제1구역(기존 규모 재·축 허용) 및 제2구역(최고높이 11m, 3층이하) 일부포함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하고자 신축하고자 2014.7.28일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 최고높이 5.55m→7.35m로 변경에 따른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2015.2.16.)

(* 문화재위원)**

- 본 신청 건물은 기 허가받은 건물높이 5.55m를 7.35m로 1.8m 증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변에 동일한 높이의 건물이 있고 기 허가된 건물에 비해 높이가 1.8m 더 높아졌다고 해서 철새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 건물은 기 허가된 사항 중 층고를 5.55m에서 7.35m로 당초 허가 사항보다 1.8m 높여 변경하여, 현재 건축이 된 상태임
- 이 지역의 주변에는 신축 건물의 층고보다 높은 건물들이 자리해 있어, 신축 건물의 높이 증가에 따른 이 지역의 환경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여겨짐

바. 의결사항 : 가결

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1)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2015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 재조사 후 심의”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발(***)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물양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
 - 사업목적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물양장 조성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골재 세척, 적치, 이송
 - 규모 : 물양장 사용면적 1,672㎡, 방진벽 설치 160m*4.9m*0.3m, 세륜장 설치 4m*8m*1.5m, 세척조 설치 10m*10m*1.5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제4구역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문화재구역(*****)과 허용기준 제4구역(*****)에 물양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본 물양장 조성사업 예정지는 을숙도와 마주하는 명지동 낙동강변의 문화재 구역을 포함한 4구역에 해당하며, 바닷모래를 운반선으로 실어와 세척작업을 거쳐 적치해 두는 장소로 이용될 예정임
- 방진벽과 세척조를 설치 운용에도 불구하고 흙먼지 날림, 오염폐수 유입 등이 예상되며, 접안시설 설치와 하역작업에 따른 소음발생 등으로 철새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2)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발(***)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 *****
 - 사업목적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골재 세척, 적치, 이송
 - 규모 : 물양장 사용면적 1,673㎡, 방진벽 설치 160m*4.9m*0.3m, 세륜장 설치 4m*8m*1.5m, 세척조 설치 10m*10m*1.5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문화재구역(*****, *****)과 허용기준 제4구역(*****)에 물양장을 조성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낙동강 하류 지역의 서측 강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물양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관리기관인 강서구청에 의해 ***** 바 있으나, 정우산업개발의 물양장 운영을 위한 방진벽과 적치장 등의 기존 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
- 본 물양장 조성사업 예정지는 을숙도와 마주하는 명지동 낙동강변의 문화재구역을 포함한 4구역에 해당하며, 바닷모래를 운반선으로 실어와 세척작업을 거쳐 적치해 두는 장소로 이용될 예정임
- 방진벽과 세척조를 설치 운용에도 불구하고 흙먼지 날림, 오염폐수 유입 등이 예상되며, 접안시설 설치와 하역작업에 따른 소음발생 등으로 철새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3)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물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발(***)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 사업목적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골재 세척, 적치, 이송
 - 규모 : 물양장 사용면적 3,300㎡, 방진벽 설치 82m*9.18m*5m, 세륜장 설치 3m*20m*1m, 세척조 설치 10m*10m*1.5m*2개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문화재구역(1459-1)과 동 필지 허용기준 제4구역에 물양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낙동강 하류 지역의 서측 강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물양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관리기관인 강서구청에 의해 *****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골재 적치를 위한 야적장 표면은 모래 등에 의해 피복이 되었으나, 바닥면의 콘크리트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야적장 일부에 물양장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적치물들의 일부가 존치된 상태임
- 본 물양장 조성사업 예정지는 을숙도와 마주하는 명지동 낙동강변의 문화재구역을 포함한 4구역에 해당하며, 바닷모래를 운반선으로 실어와 세척작업을 거쳐 적치해 두는 장소로 이용될 예정임
- 방진벽과 세척조를 설치 운용에도 불구하고 흙먼지 날림, 오염폐수 유입 등이 예상되며, 집안시설 설치와 하역작업에 따른 소음발생 등으로 철새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
 - 사업목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규모 : 신청면적 328㎡, 건축면적 및 연면적 195㎡, 건물 1층 최고높이 8m
건폐율 59.45%(법정60%), 용적률 59.45%(법정300%), 조경면적18.23㎡
 - 기타 : 지붕 THK175 샌드위치판넬(난연2급), 사면 THK125 샌드위치 판넬, 오수정화조 설치, 주차대수 1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 ※ 제1구역(기존 규모 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을 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이며, 신청지는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문화재구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해당 신청지는 맥도강에서 20m 이격된 신청지역(제1구역)에 자리한 1층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층고 8m의 창고형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임
- 이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는 기존 규모의 재개축만이 가능한 지역이며, 인접한 허용기준 제1구역 지역에는 층고 6m 정도의 창고형 건물이 들어서 있음
- 따라서 주변 지역인 이 지역의 환경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철거 대상인 기존 건물의 규모 범위(층고 5m 정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번지, 산*****번지
 - 사업목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규모 : 대지면적 9436㎡(사용면적 3990㎡), 건축면적 584.77㎡, 연면적 1150.31㎡, 건물 2층 최고높이 11m
건폐율 14.66%, 용적률 28.83%, 조경면적18.23㎡
 - 1동 : 1층(휴게음식점 411.89㎡), 2층(휴게음식점 408.39㎡)
 - 2동 : 1층(휴게음식점 165.96㎡), 2층(휴게음식점 164.07㎡)
 - 기타 : 자주식 주차대수 58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0m(바로 인접)
 - ※ 제1구역(기존 규모 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2동을 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이며, 신청지는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문화재구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본 건물 신축건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의 도로와 해변 사이의 도로 사면부에 휴게용 음식점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도요등 모래톱으로부터 2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변으로 철새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16.)**

- 상기 신청 건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 지역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강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연안사주와 주변 수역은 철새들의 주요 서식처로 활용되는 지역임
- 따라서 이 지역 철새서식처 환경의 절대적 보호를 위해서 상기 신청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 부결

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1)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등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건물 18동, 터널 2개소(179.3m×2.1m×2.6m, 109.5m×2.1m×2.6m)
 - 신청면적 5,782.32㎡, 연면적 1,300.32㎡, 건축면적 1,068.42㎡
 - 성절토 최대 9m
 - 사업금액 : 3,782,894천원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제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1층이하), 제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에 *****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물 산포지가 3군데 보고되어 표본조사를 선행한 후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 2015.2.5)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 위치한 섬에서 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 보강하기 위해 사이사이에 **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임
- 섬의 남서쪽에 설치예정인 일부 **는 국내 최대의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번식지인 비도와 300m 가량 이격되어 있어 **의 추가설치 및 운용은 저어새들의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비도의 저어새 번식장소는 바람의 방향과 알자리 적합성 때문에 사업예정지에서 보이지 않는 반대편 사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준수한다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공사시 번식기인 4월~8월에 소음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비 운용 및 야간공사를 자제하고, 공사시 및 운용시 서치라이트를 비도 번식지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인부 및 ***들에게 국가문화재(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주변에 패총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절성토시 주변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패총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함

(*** 박사 *조류전문가)

- 사업신청지역 내 18개 건축 초소동 중에서 일부는 국내 저어새 최대 번식지인 비도(약 100~150쌍)와 해안에서 약 300m 에 불과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조사가 필요하였음.
 - 일부 비도 번식지와 가까운 건축동 위치 5개 지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저어새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현장 조사를 하였음.
 - 현장 조사 결과, 건축물이 폐쇄형 **로서 저어새 번식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저어새가 집중 번식을 하는 4월~6월에는 굴착 공사나 시각적 방해를 줄 수 있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추후 비도 저어새 번식지 모니터링 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공사 지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람.
- 사업신청지역(터널)은 국내 저어새 최대 번식지인 비도(약 100~150쌍)와 직선거리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저어새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현장 조사를 하였음.

- 현장 조사 결과, 터널 구조물이 저어새 번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현장 공사 시에 굴착 공사나 소음이 많은 공사는 저어새가 집중 번식하는 4~6월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이후 비도에 대한 저어새 모니터링 시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잠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0.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2)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등 일원
- 지정일 : 1966.7.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건물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대지면적 : 1,786㎡

- 건축면적 : 351.52㎡

- 연 면 적 : 576.38㎡

- 최고높이 : 8m

- 층 별 : 지하1층, 지상2층

- 비 고 : 벽돌마감 및 평슬라브 지붕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에 ****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물 산포지가 3군데 보고되어 표본조사를 선행한 후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 2015.2.5)

(*** 문화재위원, *** 박사 *조류전문가)

- 본 사업은 *****에 위치한 섬에서 섬의 정상부 가까운 산록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창고)을 제거하고 면적을 확장하여 ***** 개축하는 것으로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절성토 부분이 많아 신청한 것임
- 섬의 남서쪽에 300m 가량 이격하여 국내 최대의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번식지인 비도가 위치해 있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이 저어새의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번식기인 4월~8월에 소음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비의 운용 및 야간공사를 자제한다면 영향이 크게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예정지의 절성토 부분에 인접하여 폐층의 분포가 확인되고 있어 훼손이 우려되며, 섬 일대에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가 3개소 확인되어 표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현상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1.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등 일원

○ 지정일 : 1966.7.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861.00m²

- 건축면적 : 171.74m²

- 연 면 적 : 171.74m²

- 층수/높이 : 4.7m / 지상1층

- 건 폐 율 : $171.74 / 861.00 * 100 = 19.9465 \%$

- 용 적 율 : $171.74 / 861.00 * 100 = 19.9465 \%$

- 정 화 조 : 15인용 오수정화조

- 비 고 : 산지전용 허가 면적 861m²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이하)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2.6.4일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 초과 및 신청자 변경으로 현상 변경 제2구역에 단독주택 1층을 건립하고자 재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옹벽 설치로 경관을 고려한 조경계획과 옹벽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 2015.2.5)

(*** 문화재위원)

- 본 주택신축은 허가기간 만료로 재신청하는 건으로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옹벽설치 문제로 신청되었음.
- 해안에서부터 건축부지까지의 비탈면은 콘크리트 옹벽 4m, 소단 1m, 콘크리트 옹벽 4m, 소단 1m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경관문제를 검토한 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박사 *조류전문가)

- 사업지역은 장화리 해안에 인접한 2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 신축 건물 건축으로 인한 저어새 서식에 영향을 주는 지 현장과 자료 조사를 통해 검토함.
- 비록 해안에서 떨어져 있으나 저어새들이 해안을 종종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 가까이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2단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 현장 조사 결과, 옹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옹벽이 건물 예정지 앞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음. 건축물이 1층으로 낮아 저어새 갯벌서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각적 기피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됨.
- 자료 조사 결과, 강화 갯벌의 저어새들은 여차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본 사업지까지 해안 갯벌이 연결되어 저어새들이 종종 장화리 신청지 인근 200m 해안까지 이동해오는 것으로 확인됨. 위성추적에 의한 저어새 분포를 보면 해안 인근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해안 가까이 접근하거나 내륙까지도 들어왔으나 해안 인근에 펜션이나 건축물이 있는 곳은 저어새가 해안에서 거리를 멀리하여 서식범위가 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가급적 건축물이 눈에 덜 띠는 색으로 채색되기를 권고함. 또한 옹벽 아래와 중간에도 관목, 넝쿨성식물, 혹은 키 큰 초본류를 식재하여 해안의 저어새 시각에서 옹벽과 건축물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또한 해안으로 접근로를 차단해주길 바람.
- 더불어 인근 해안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유출, 건축 후 생활하수와 오수 유입에 의해 갯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수 방류에 대하여 검토하길 바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2.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향암 무 재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향암 무 재배)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등,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등
 - 지정일 : 1975. 2.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향암 무 재배)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신촌동 *** 외8필지, 문발동 ***** 외2필지
 - 사업목적 :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향암 무 재배)을 위함.
 - 사업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신청면적(m ²)
문발동	*****	하천	1,054,325	1,054,325
문발동	*****	하천	382,668	382,668
문발동	*****	하천	728,567	728,567
신촌동	*****	하천	33,805	33,805
신촌동	*****	하천	45,863	45,863
신촌동	*****	하천	2,797	2,797
신촌동	*****	하천	2,066	2,066
신촌동	*****	하천	2,858	2,858
신촌동	*****	하천	4,986	4,986
신촌동	*****	하천	57,627	57,627
신촌동	*****	하천	1,931	1,931
신촌동	*****	하천	1,494,192	1,494,192
계			3,811,412	3,811,41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문화재구역 내 영농사업인 바이오씨감자 및 향암 무 재배를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업으로 한강하류와 바로 인접한 갈대로 이루어진 하천 부지로 재두루미 도래시 먹이터 및 쉼터의 공간으로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 2015.2.6)

(*** 문화재위원)

- 본 신청건은 재두루미도래지 지정구역 내의 283만평에 갈대를 제거하고 밭으로 개간하여 감자와 무를 재배하려는 것으로, 인접한 고양시 지역에서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사업 신청지는 당초 갯벌 및 습지로 천연기념물인 개리와 재두루미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가 많이 분포하였으나, 상류의 고양시 구역에서 농경지(논) 침식방지를 위해 제방을 쌓은 후부터 퇴적이 일어나 현재까지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한강하류 습지는 현재 랍사르습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시 하성면 농경지 일대는 재두루미 서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잠자리 부족으로 아직 재두루미의 이용 빈도는 저조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사업 신청건은 고양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두루미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밭으로 전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재두루미의 보전을 위해 논습지와 갯벌습지로 전환하여 먹이공급은 물론 대규모 잠자리를 조성해 주는 것이 미래의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박사 *조류전문가)

- 사업지역은 한강하류와 장월평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하류로 자유로변 간이 쉼터 인근 초소가 있는 지점까지 위치한 381ha의 광범위한 지역이며 갈대, 모새달, 물억새 등의 키 큰 초본류가 서식하는 소택지와 조간대 수역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재두루미 도래에 영향을 주는 지 현장 조사를 통해 검토함.
- 현장과 자료 조사 결과,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은 1994년 자유로 개통으로 인하여 재두루미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이후 파주 출판단지, 통일촌 등의 주변 개발로 인하여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음. 그로 인하여 매년 재두루미의 도래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더불어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벗어난 고양시 쪽 한강변 농지 개발로 인해 물의 흐름이 차단, 토사 퇴적되어 재두루미들이 먹이터로 이용되던 현 영농 신청지역이 과거 염습지에서 갈대 등의 키 큰 풀이 자라는 소택지로 변하게 됨. 이와 같이 주변 개발과 영농행위로 인해 재두루미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두루미 서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농 재배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은 한강하구에서 재두루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현상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김포 후평리 일대에 재두루미 서식지 조성을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개체수 증가가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사업예정지역을 향후 재두루미의 잠자리와 먹이터로 복원하여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영농을 허가하게 되면 복원 노력을 할 수 없게 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13.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포획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의 생태 및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포획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리」의 생태 및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국립생태원)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 소재지 : 전국 일원
 - 지정일 : 1982. 11. 16.
 - 개리(*Anser cygnoides*)는 동아시아(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중국 동남부와 한국에서 월동)에 분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60,000여 마리만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IUCN Redlist, VU등급)이며,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5-1호로 지정된 보호종임
- (3) 신청내용
 - 신청목적 : 개리(*Anser cygnoides*) 월동생태 및 서식지, 이동경로 연구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포획
 - 포획개체 :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5개체
 - 포획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해안 일대(장항읍, 마서면, 중천면)
 - 포획방법 : 월동후기인 2월말~3월초에 캐논넷(canon-net)을 사용하여 포획
(캐논넷 사용은 포획경험이 많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 자문 및 협력)
 - 가락지, 야생동물추적장치(WT-200, GPS-WCDMA based Telemetry) 부착
 - 야생동물추적장치의 무게는 50g으로 개리 몸무게(약 3kg)의 1%미만으로 비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권장기준 5%이하), 백팩(back-pack) 형태로 등쪽에 부착함.
 - 포획개체의 기초 신체 측정 및 건강상태 검사후 방사
 - * 국립생태원 동물병원부 협력: 전문수의사 동참

라.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 개리는 전세계 생존개체수 6만 정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는 겨울철 서천갯벌과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최대 100개체 정도가 월동하고 있음
- 월동지와 번식지간 이동경로 추적연구의 일환으로 5개체를 포획하여 전파 추적장치를 부착 방사할 예정인 바,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5개체 포획방사가 개체군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포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 현재 몽골에서 번식하고 한국에서 월동하거나 중국의 남쪽지방 등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월동 또는 번식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함.
- 개리의 번식 및 월동지 파악 그리고 이동경로의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마리의 위치추적장치가 부착해야 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연구계획서에는 5마리를 포획하는데 그 중 몇 마리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연구를 수행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5마리 중 몇 마리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건지 그리고 어디서 포획할건지 등 자료를 보완했으면 함. 적어도 이번에 포획하는 5마리 전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별도의 보완자료 요청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가결

14.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포획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의 행동생태 및 개체군 유전학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포획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검은머리물떼새」의 행동생태 및 개체군 유전학 연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국립생태원)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 소재지 : 전국 일원
 - 지정일 : 1982. 11. 16.
 -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는 전세계 3개 아종(*ostralegus*, *longipes*, *osculans*)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 도래하는 아종은 *H. o. osculans*로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 중국 동북부, 한국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해안에서 월동함.
- (3) 신청내용
 - 신청목적 :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 행동생태 및 개체군 유전학 연구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포획
 - 포획개체(포획방법) :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100개체
 - 유부도 월동 개체군은 캐논넷(canon-net)으로 포획(2~3월) : 50개체 이내
 - 만조시 휴식지점에서 집단으로 휴식하는 개체 대상
 - 캐논넷 사용시 경험이 많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 자문 및 협력
 - 유부도 번식 개체(성조, 유조) 포획(4~6월) : 20개체 이내
 - 성조는 포란중인 개체를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함
 - 유조는 이소후 부모와 함께 다니는 유조를 포획: 접근시 유조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 웅크리고 숨어있음
 - 기타 주요 번식지(5~6곳) : 30개체 이내(주요 번식지 각 10개체 이내)

- 표식방법 : 가락지(유색플렉, 금속가락지) 부착
 - 동아시아-대양주 국가 및 지역별 도요물떼새류 컬러플렉 색배정에 따라 흰색(tibia, 개체번호표시), 주황색(tarsus)의 플렉형 가락지 부착하여 개체구분 가능
- 검은머리물떼새 혈액채취 및 분석
 - 유부도 월동 개체군 50개체 이내, 유부도 번식집단 20개체 이내, 기타 주요 번식지 5~6곳에서 10개체 이내 혈액샘플 채취
 - 번식집단은 성조, 유조를 포함하여 포획
 - 날개 또는 다리정맥에서 주사바늘로 찔러 소량(200~300 μ l, 약 한방울)의 혈액을 모세관으로 채혈
 - EDTA가 처리된 튜브에 넣어 냉장보관, DNA 추출후 microsatellite 분석

라. 검토의견

(*** 문화재 위원)

- 검은머리물떼새는 전세계 생존개체수 1만 정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는 5천여 개체가 서천군 유부도 갯벌을 중심으로 월동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유부도를 비롯하여 서해안 무인도 일대에서 분산 번식하고 있음
- 유부도 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의 월동지이자 번식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목적에 비해 포획개체수(100개체)가 지나치게 많고 성조와 새끼의 포획개체수가 불분명하며, 특히 유부도에서 캐논넷(canon-net) 사용은 다른 개체들 및 다른 종들의 서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포획을 불허하는 것이 유부도 철새도래지의 보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 전문위원)

- 검은머리물떼새의 연구방향과 연구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100마리에 대한 포획은 양적으로 매우 많다고 사료되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0마리라는 포획수는 전세계 생존개체수의 1%에 해당하고 한국에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의 2%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수를 포획하여 단계적으로 장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포획개체수 조정 등 보완자료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15.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지정 해제

가. 제안사항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고사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고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물은 본 위원회 '14년 제12차 회의(2014.12.23)의 검토를 거쳐 해제 예고 후 심의사항으로 부의하는 것임.
 - 해제 예고일 : 2015. 1. 5
 - 해제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2015.1.5~2.3)
 - 해제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 (3)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영취원 내)
- (4) 해제내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영취원 내)
 - 수 량 : 1주(236m²)
 - 지 정 일 : 2009.10.15.

라. 검토의견 (*****)

- 2012년 태풍 블라벤 강풍피해 및 생리적 노쇠 등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하였으나 2014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최종 고사 판정되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4.11.18.)

<*** 문화재위원>

- 2014.11.18일 현지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는 완전히 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뿌리 부분에서 발생한 맹아는 다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문화재위원>

- 본 산사나무는 2012년 태풍 불라벤 이후 노쇠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처음 원인 발생 이후 병해충 방제 등 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문화재위원>

- 태풍 불라벤의 피해에 의해 암브로시아나무종 침입으로 인한 다양한 병해가 나타났고, 그 여파로 노거수의 면역력이 쇠퇴하여 고사에 이름
- 그 동안 수차례 병해충 방제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생리적 노쇠현상에 의해 고사하여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16.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 일원

○ 지정일 : 1993.8.1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

○ 사업내용 : 지하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9.5m), 건축면적 142.73㎡, 연면적 275.52㎡, 조경면적 26.02㎡, 부패탱크식 정화조(20인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6m 이격된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에 해당되나 신청부지 주변은 1~3층 규모의 펜션 및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7.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설치 등 도로개설 허가사항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강정3교) 설치 및 「제주 강정동 담팔수」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설치 및 「제주 강정동 담팔수」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 2014년 제4차('14.4.25)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 후 도로개설 계획(선형) 및 교량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544호 제주 강정동 담팔수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강정동 5647
 - 지정일 : 1964.1.31 / 2013.4.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강정3교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외
 - 사업내용

구분	당초허가('14.4.25)	금회신청('15.2.25)	비고
연장(L)	2.0km	2.3km	
폭원(B)	15.5~25.5m	좌동	
강정3교 면적	3,140.0m ²	4,868.0m ²	
강정3교 규격	Beam 교량(PSC 거더교, L=55.0m, B=26.4m)	Beam 교량(PSC 거더교, L=55.5m, B=27.95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2014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 후 강정수원지 수자원 오염 보호를 위해 도로개설 계획(선형) 및 교량 설치 위치(약 70m 상류쪽 이동)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8.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참고사항

- '11. 5.12 : 익산 천호동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10필지 50,117㎡)
* 오염된 지표수 및 축산폐수의 동굴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 동굴 제2입구 인근(돌리네 지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15. 2. 9 : 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익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 산21 등
 - 지정일 : 1996.02.28.
- (3) 신청내용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단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라. 검토의견(***)**

-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및 2구역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 조사/2015.2.16)

<* 문화재위원>**

- 익산 천호동굴은 석회암동굴로서 규모가 크거나, 내부의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들이 많이 발달하고 다양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1966.3.2.)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질분포 특성상 지역적 희귀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것임.
- 천호동굴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상류의 입구주변에 발달한 돌리네 외륜(外輪) 지역의 소 사유장(축사)과 동굴이 인접하고 나란하게 채석장이 있었던 것임.
- 그러나 최상류의 돌리네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분 매입하여 축사를 철거함으로써 동굴 내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채석장은 오랜 소송 끝에 채석이 중단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 기존 주택 재·개축 허용)으로 설정되어 동굴의 보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표경사 방향은 대부분 동굴의 발달 방향과 반대이거나 나란하기 때문에 허용기준 2구역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관계 법률을 적용토록 하여도 동굴에 미치는 지표수나 지하수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천호동굴은 강원권 이외의 지역에 발달하는 석회동굴로 규모나 2차 생성물 등이 강원지역의 석회동굴에 비해 우수하지는 않으나 지역적 희소성이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음.
- 현장 확인 조사결과 제출된 현상변경 기준안은 극히 제한적인 분포를 가지는 석회암의 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음. 다만 제2구역이라 하더라도 공통사항으로 적시된 진동 유발이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재위원>**

- 천호동굴은 북동-남서의 방향을 가지며 대상으로 분포하는 변성석회암층을 따라 900여 m의 길이로 형성된 동굴로, 호남 지역 유일의 천연기념물 석회 동굴임
- 이 동굴의 북동측 입구 주변에는 석회암의 용해로부터 기인된 침하지형이 국부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침하지형 및 주변 지역에서는 축사를 운영하는 목장이 운영되어 왔음
- 따라서 과거 축사 운영으로 인한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이 천호 동굴의 환경적 위험요소로 상존된 상태였음
- 천호동굴 관리기관인 익산시에서는 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축사가 운영되는 농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자연상태의 복원이 진행 중에 있음
- 상기 신청 건은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동굴 북동측 입구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이 지역에서의 오염물질 유발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및 2구역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상기 신청 건의 목적과 내용은 천호동굴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순환적 조치사항으로 판단됨

<****에서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
 - 천호산 북쪽에 위치한 천호동굴 제2입구 부근은 돌리네 지형인 싱크홀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모이는 지표수나 축산폐수가 동굴로 흘러들어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는 지역임
 - 금번 이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은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더 이상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폐수 등의 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교수
 - 개정하려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기존의 안보다 확장된 안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됨. 단지 제1구역의 기준에서 기존 규모의 재·개축 행위는 동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진동을 유발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는 점과 문화재가 자연자원 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원지형 보존’으로 하였으면 함. 그리고 이 지역에 기존의 민가가 있다면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함.

- 크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거리에 의한 원으로 구역을 표시하고 있음. 현상변경 구역은 최종적으로 전산지적도에 탑재하게 되며 번지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게 됨. 따라서 이 부근의 지적을 보면 대형의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걱정하게 분할된다면 주민 재산상의 면이나 여러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19.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내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외

○ 지정일 : 1966.06.14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환선굴 입구 화장실 설치(1동)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

○ 사업목적 : 환선굴 관람객 및 직원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 사업내용 : 화장실 1동

- 디자인 화장실 설치 : 1개소(2.7*2.2*3.0)

- 내충격 하수관 배관 : HI-VGI, 100mm, 선로구간L=450m, 토사구간L=50m

- 합성목재 데크설치 : 140 * 24T, 10m²

- 관매달기 : 파이프행거 Ø200mm, 225개소(선로구간 직관 2m당 1개소 설치)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환선굴 입구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178호(1966.6.1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의 환선굴은 그 입구가 해발 530여m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회암 동굴로서 연간 50만~6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환선굴 입구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동굴내에서 임의로 용변을 보고 있어 동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화장실(응급용)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규모 시설이라도 위치는 환선굴 입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이어야 할 것임.
-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3 곳이 가능할 것이나 주 장단점은 아래와 같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① 삼척시 제시(1안)

- 장점
 - 설치비용이 적게 듦
- 단점
 - 경사 30° 내외되는 경사지를 절취함
 -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이 있음
 - 폭우시 낙석, 사태 등에 의한 안전성 문제

② 승강장 확장안(2) 또는 승강장 아래(3안)

- 장점
 - 승강장 일부를 확장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 최소화
- 단점
 - 설치비용이 많이 듦
 - 3안은 홍수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 남녀용 변기 수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예; 남성용 소변기 1, 여성용 변기 1, 남녀 공용 1)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20.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8호 「우도 홍조단괴 해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71-5
 - 지정일 : 2004.04.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 주택 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56.48㎡
 - 연면적 : 지상 1층 14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존시설물)
지상 2층 150.31㎡ 다가구주택(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최고높이 : 7.3m(기존 3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에 다가구 주택 증축 건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2015.1.29)

<*** 문화재위원>

- 신청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서 원지형 보존지역이며, 기존 주택 개축, 재축만이 허용될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민원이 주변에서 있었으나 모두 불허되었음. 따라서 허용기준 위반과 형평성으로 증축은 불허되어야 함
- 홍조단괴 침식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이 지역의 민원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관련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21. 「문경새재」내 아리랑 기념비 설치

가. 제안사항

「문경새재」내 아리랑 기념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새재」는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조선시대 고갯길로서 이 길을 통해 경북·충·경·충·경·충 시 부역자로 간 문경인 등에 의해 불리운 아리랑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경새재 상징물 설치사업 추진 위원회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42번지 8호
 - 지정일 : 2007.12.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문경새재 아리랑 기념비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
(문경새재길 입구 측구 끝나는 지점)
 - 사업내용
 - 비문 : (전면) 문경새재 아리랑비, (후면) 문경새재 아리랑 유래
 - 규모 : 자연석(화강석), 높이 5.1m(받침석 포함)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5.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내

라. 검토의견 (*****)

- 「문경새재」내 제2관문~3관문 사이에 현재 아리랑 기념비(1983년 건립, 1990년경 변경)가 있으나 추가로 문경새재 입구에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이므로 신청한 아리랑 기념비 규모 등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3)

- 본 사업은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경새재 옛길’과 ‘문경새재 아리랑’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문경새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석을 추가로 건립하려는 것임.
- 문경시는 2008년부터 매년 ‘문경새재아리랑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아리랑 관련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문경시는 ‘문경새재 아리랑’을 기념하는 비석을 이미 1983년 문경새재 제2 관문 앞에 설치한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방문객들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경새재 옛길이 시작하는 입구 오른쪽 측면에 비석을 추가로 건립하기를 원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문경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석의 재질과 규모가 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하기 어려움.
- 높이 5.1m에 달하는 자연 상태의 화강암이 문경새재 옛길 입구에 딱 버티고 서있는 것을 방문객들이 마주할 때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저해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22. 「문경새재」 내 옛길 보존 기념비 설치

가. 제안사항

「문경새재」 내 옛길 보존 기념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새재」는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조선시대 고갯길로서 문경 제1관문~3관문 사이에 각종 차량 통행과 포장을 금지하여 보존된 옛길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경새재 상징물 설치사업 추진 위원회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42번지 8호
 - 지정일 : 2007.12.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문경새재 옛길 보존 기념비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1관문 지나 비석군 전)
 - 사업내용
 - 비문 : (전면) 문경새재 옛길 보존 기념비,
(후면) 옛길 보존 관련 ***** **** 등
 - 규모 : 자연석(화강석), 높이 6.4m(받침석 포함)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5.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내

라. 검토의견 (*****)

- 「문경새재」 내 옛길 보존 기념비 설치는 *****이 1978.11.24. 문경새재에 방문하여 옛길 보존에 관하여 *****에게 지시한 일화를 기념하는 비석으로 기념비 규모 등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2.3)

- 본 사업은 *** **에 관한 일화를 기념하는 비석을 문경새재 1관문을 지나 위치해 있는 ‘비석군’에 인접하여 건립함으로써 문경새재 옛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 비석 전면에는 “문경새재 옛길 보존 기념비”라는 명칭, 그리고 후면에는 옛길 보존 관련 **** * 등을 새겨 넣을 계획임.
- 문경새재 옛길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문화경관”으로 간주할 때 이에 관계되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을 건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되면서도 비석의 재질과 규모가 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됨.
- 특히 비석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에 인접하여 조선시대 비석들이 비슷한 규모로 한데 모여 있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로 방문객의 시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검토사항】

천기 2015-02-23

23.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 내 황새 입식」 사전 검토

가. 제안사항

황새의 안정적인 사육을 통해 방사된 황새와 추후 방사할 황새의 성공적 “텃새 황새 복원”을 위해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 내 황새 입식」에 따른 「오픈장 황새의 날개깃 다듬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산황새공원 내 황새 울타리정원(오픈장)」 입식 황새의 안정적인 사육과 성공적 ‘황새 방사’를 위한 「오픈장 황새의 날개깃 다듬기」와 관련하여 ‘동물 학대의 논란’이 있어 사전에 검토를 받고자 함
- 「오픈장 황새의 날개깃 다듬기」는 “텃새 황새의 성공적 복원”을 위한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일정 시기동안 황새의 비행을 제한하기 위해 깃다듬기가 필요하며, 깃다듬기의 방법은 황새의 생존과 번식에 전혀 무해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산군수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소재지 : 예산황새공원 내 울타리정원(오픈장)
 - 지정일 : 1968.05.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 내 황새 입식」 사전 검토
 - 소재지 : 예산황새공원 내 울타리정원(오픈장)
 - 사업내용
 - 내용 : 황새 10개체 날개깃 다듬기
 - 방법 : 깃다듬기 방법은 깃축을 그대로 남겨두고 깃판을 제거하는 생장과 번식에 무해한 방법 사용

- 시기

- 3월 15-16일 : 울타리정원(오픈장)에 사육할 황새 선택
- 3월 17-20일 : 선택한 황새 날개깃 다듬기(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 3월 20-25일 : 선택된 황새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에 입식

라. 검토의견 (*****)

- 「예산황새공원 울타리정원(오픈장) 내 입식 황새의 날개깃 다듬기는 방사된 개체와 추후 방사될 개체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깃축을 그대로 남겨두고 깃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황새의 생존과 번식에 무해하다고 판단되나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문화재 전문위원 ***** 의견 2015.2.18)

- 예산 황새마을에는 지붕 없는 울타리정원에 황새를 방사하여 현지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황새의 깃다듬기가 필요하다. 깃다듬기는 황새가 현지 적응과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울타리 밖에 탈출하여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신청서에서 기재한 깃다듬기 방법은 황새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건(황새의 깃다듬기)을 허가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5-02-24

2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7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 신청인 :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허가사항 : 소각 ○ 수량 : 1개체 ○ 사유 :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 신청인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충북 청주시 ○ 허가사항 : 소각 ○ 수량 : 1개체 ○ 사유 :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신청인 :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허가사항 : 소각 ○ 수량 : 1개체 ○ 사유 :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광주 서구 ○ 허가사항 : 사육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국립생태원 기초생태연구본부 ○ 허가사항 : 낙동강 하구 생태계 내 야생생물 서식지 모니터링·관리·보전 체계 구축 - 식물, 저서성무척추동물, 유영동물, 조류군집 모니터링 - 생태계보호지역 내 생태계 유형별 서식지 특성 조사 - 사업위치 : 을숙도생태복원지, 연안사주를 포함한 낙동 강하구 일원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12.31. ○ 허가조건 : 선박 및 조사원의 출입횟수는 조사원 인원수 는 최소화, 5, 6, 11월 조사시 조류분야 전문가 결정에 따 라 철새의 번식 및 월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사하구청장 ○ 허가사항 : 2015년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하구 유입 쓰레기 900여톤 수거·처리 · 1단계 : 2015.3~7월(5개월), 2단계 : 2015.8~12월 - 사업위치 : 항·포구, 해안가 및 맹금머리, 사자등, 백합등, 도요등, 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 일원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12.31 ○ 허가조건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는 다양한 조류(철새) 번식지로 조류 번식시기인 4월~8월은 번식지(맹금머리, 사자등, 백합등, 도요등, 을숙도)에 직접 들어가 수거하는 행위 금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강화군수 ○ 허가사항 : 아차도 해안침식 사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력식 옹벽 1식(길이 36.7m, 높이 3.5m, 너비 3.1m)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산 8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12.31. ○ 허가조건 : 해안침식 사방사업시 직선형보다 기존의 해안선과 동일하게 곡선형으로 시행할 것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강화군수 ○ 허가사항 : 교동도 해안침식 사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력식 옹벽 1식(길이 700m, 높이 3.5m, 너비 3.1m)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산1번지, 525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12.31. ○ 허가조건 : 해안침식 사방사업시 직선형보다 기존의 해안선과 동일하게 곡선형으로 시행할 것 	<허가>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완도 정도리 구계등 육상전복양식장 신축 - 사업위치 :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 ***, ***번지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양식장) 지상1층, 면적 1,481.32㎡, 높이 3.15m, 파이프구조(가설건축물) ▶나동(양수실) 지하 1층, 지상1층, 연면적(60㎡), 건축면적 30㎡, 높이3m,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기간 : 2015.1.26.~2015.12.31. ○ 문화재와이격거리: 1 구역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문경시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문경새재 내 탐방로 측구 정비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2~3관문) - 사업내용 2~3관문(3km) 구간 중 4개소 무근콘크리트용 측구 해체 자연석 쌓기 측구로 변경하여 기존 규모로 개축(L=233.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구 쌓기용 자연석은 인근에 쌓아진 것 과 동일한 성질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할 것 - 자연석쌓기 방식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허가기간 : 2015.2.16.~2015.12.31. ○ 문화재와이격거리: 지정구역내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공장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번지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1,831.40㎡ · 연 면 적 : 1,973.69㎡ · 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 지상1층(1,2,3동), 지상2층(4동) · 최고높이 : 1동(14.90m), 2동(10.125m), 3동(10.125m), 4동(8.95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5.1.26 ~ 2015. 11. 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공장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번지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1,020.39㎡ · 연 면 적 : 1,147.38㎡ · 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 지상1층(1,2동), 지상2층(3동) · 최고높이 : 1동(10.45m), 2동(10.125m), 3동(8.95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5.1.26 ~ 2015. 11. 30.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번지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035.69㎡ · 연 면 적 : 1,177.98㎡ · 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 지상1층(1,2동), 지상2층(3동) · 최고높이 : 1동(10.45m), 2동(10.125m), 3동(8.95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5.1.26 ~ 2015. 11. 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번지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64.78㎡ · 연 면 적 : 1,107.07㎡ · 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 지상1층(1동), 지상2층(2동) · 최고높이 : 1동(14.90m), 2동(8.95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5.1.26 ~ 2015. 11. 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번지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489.57㎡ · 연 면적 : 1,616.57㎡ · 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 지상1층(1,2동), 지상2층(3동) · 최고높이 : 1,2동(10.20m), 3동(8.95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5.1.26 ~ 2015. 11. 30.</p>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p>○ 신청인 : 강화군수 ○ 허가사항 : 생태해안체험시설 조성사업 변경허가 - 사업내용 ❖ 당초허가 · 산책로 : L= 1.0km, 폭원 : B=4.0m · 원두막 1개소, 통나무의자 8개소, 로프웬스 300m · 시조형물 : 1개소, 원목의자 : 1식, 솟대 : 1식 · 종합안내판 : 2개소, 방향안내판 : 4개소 · 식재 : 해당화 : 300주, 억새 15,000본 · 판매시설 (가변형) : 1개소, 원주목포장 : 75.7㎡ ❖ 변경허가 · 시점부 노선 변경 L=160m(당초)→L=127m(변경) · 해맞이 광장 변경 : 목재데크A 139㎡(당초)→107㎡(변경) : 목재데크B 56㎡(당초)→29㎡(변경) : 야외무대 89㎡(증) : 파고라 2개소(당초)→1개소(변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375번지 외33필지 ○ 허가기간 : 2014.2.28~2016.12.30 ○ 허가기간 변경허가 : 허가일로부터 2016.12.30 ○ 변경사유 : 토지매입 불가로 인한 산책로 노선 변경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 신청</p>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p>○ 신청인 : (주)**에너지 ○ 허가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증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475-3 (당초허가사항) · 폐기물 저장창고 2동 신축 : 일반철골조, 1층, 연면적 300㎡/90㎡, 층고 9.95m/6.4m · 주차장 1동 신축 : 경량철골조, 1층, 연면적 44㎡, 층고 3.3m · 사무실 증축 : 기존 사무실(2층) 1층 29㎡ 증축 (변경허가사항) · 건축면적 : (당초)1,792.18㎡ → (변경)1,806.18㎡ · 연면적 : (당초) 2,200.11㎡ → (변경) 2,214.11㎡ · G동 최고높이 변경 : 6.4m → (변경) 9.5m · F동 위치변경 : 동쪽으로 0.8m 이동 · F,G동 건축물 형태변경 - 허가기간 변경 : (당초) 2014.5.26 ~ 2015.1.31. → (변경) 2014.5.26 ~ 2015.11.30. ○ 허가조건 : 절토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암반과 암석 등에 대해 화석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p>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